인천 검단신도시 AB1BL 우미린 입주자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피해를 2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ynn.co.kr)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방문을 통한 관람은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등 당사가 정한 지정일에 당첨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일정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하며,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일정 및 방문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일의 경우 유니트 관람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 관련하여 또는 청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분양문의(☎032-553-4600)를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업무로 인하여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관련 최종 판단은 청약신청자의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로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2020.06.17.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2020.06.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강화 규제 사항이 적용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가능)

구분	주택소유 여부	비고
1순위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세대주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세대주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세대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이상	세대주, 세대원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제한이는 별개의 제한사항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공급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19.)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자녀가 있는 세대주 등)에게 청약자격이 부여되며, 공급물량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에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연속 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 기간이 2년인 경우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봄 또는 국외에 있으면서 발생한 변경은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봄.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활용하시기 바랍]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그 잔여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체결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처벌됨.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일 정	2021.04.29.(목)	2021.04.30.(금)	2021.05.03.(월)	2021.05.10.(월)	2021.05.13.(목) ~ 2021.05.18.(화)	2021.05.24.(월) ~ 2021.05.28.(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5/13 ~ 13:30 ~ 17:00) (5/14~5/18 ~ 09:30~17:00)	(09:30~17:00)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 14464호(2021.04.19)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8개동, 지하2층 ~ 지상 25층, 총 8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69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8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62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2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소계	일반공급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21000151	01	059.9380A	59A	59.9380	22.3975	82.3355	6.3600	40.7912	129.5127	36.7315	375	38	38	75	11	56	218	157	16
		02	059.8198B	59B	59.8198	22.3494	82.1692	6.3734	40.7107	129.2533	36.6591	170	17	17	34	5	25	98	72	7
		03	084.8773	84	84.8773	29.8267	114.7040	5.3084	57.7638	177.7762	52.0150	265	26	26	53	8	40	153	112	11
합 계												810	81	81	162	24	121	469	341	34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기타공용·주차장 = 공용면적)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로 공용면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공급세대수	층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	중도금 1회(10%) 2021–08–13	2회(10%) 2021–12–15	3회(10%) 2022–04–15	4회(10%) 2022–07–15	5회(10%) 2022–11–15	6회(10%) 2023–03–15	잔금 입주일
59A	375	5층 이상	318	112,510,000	221,590,000	334,100,000	33,50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100,140,000
		4층	16	112,510,000	214,990,000	327,500,000	32,80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32,750,000	98,200,000
		3층	16	112,510,000	205,290,000	317,800,000	31,80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31,780,000	95,320,000
		2층	16	112,510,000	195,290,000	307,800,000	30,800,000	30,780,000	30,780,000	30,780,000	30,780,000	30,780,000	30,780,000	92,320,000
		1층	9	112,510,000	182,190,000	294,700,000	29,50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88,380,000
59B	170	5층 이상	142	112,288,000	211,512,000	323,800,000	32,40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32,380,000	97,120,000
		4층	7	112,288,000	205,112,000	317,400,000	31,800,000	31,740,000	31,740,000	31,740,000	31,740,000	31,740,000	31,740,000	95,160,000
		3층	7	112,288,000	195,412,000	307,700,000	30,80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92,280,000
		2층	7	112,288,000	185,512,000	297,800,000	29,80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89,320,000
		1층	7	112,288,000	172,612,000	284,900,000	28,50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28,490,000	85,460,000
84	265	5층 이상	225	159,323,000	292,677,000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4층	11	159,323,000	283,577,000	442,900,000	44,30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44,290,000	132,860,000
		3층	11	159,323,000	270,477,000	429,800,000	43,00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128,920,000
		2층	11	159,323,000	256,877,000	416,200,000	41,70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124,780,000
		1층	7	159,323,000	239,277,000	398,600,000	39,90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119,54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금액이며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중도금은 전체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 알선 예정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59.9380A	059.8198B	084.8773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59A	59B	84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84	합 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북한이탈주민		4	1	2	7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5	2	4	11
	장기복무 제대 군인		5	2	4	1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4	2	3	9
	중소기업근로자		4	2	2	8
	우수선수		1	1	2	4
	장애인	인천광역시	7	3	4	14
		경기도	5	2	3	10
		서울	3	2	2	7
	소 계		38	17	26	8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9	9	13	41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19	8	13	40
	소 계		38	17	26	81
신혼부부 특별공급			75	34	53	16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5	8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56	25	40	121
합 계			218	98	153	46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음.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 세대에서 낙첨자 포함)으로 선정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중복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② 청약부금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됨(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특별공급 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 중복 청약 및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단,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주택 소유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6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단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7년 이내)이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의 140%이하인 자(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으로 선정합니다.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521,049원 ~10,529,467원	7,947,892원 ~11,127,047원	8,374,735원 ~11,724,628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9,025,259원 ~12,033,677원	9,537,470원 ~12,716,626원	10,049,682원 ~13,399,57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5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원	10,332,258원	10,887,154원
생애최초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777,363원~ 12,033,677원	10,332,259원~ 12,716,626원	10,887,155원~ 13,399,574원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 조회 요망.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1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청약예치금액 기준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기준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기준 이상인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은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됨.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과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Ⅳ 청약 신청 방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29.(목) (청약홈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일반공급	1순위	2021.04.30.(금) 08:00~17:30		•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앱 • 은행창구 접수(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2순위	2021.05.03.(월) 08:00~17:30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함.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바람.
– 청약자격 및 관련 내용 등 입력사항은 청약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착오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확인서 발급 (현장접수에 한함) • 공급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 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외근무자(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서류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 • 배우자의 출생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 증명 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의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발급용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일반공급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존속의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통보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세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반드시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① 접수장소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② 소득금액증명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Ⅴ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총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1순위 중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 • 동일 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제외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제출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서 통보하게 되며, 이후 변경된 경우 즉시 당사로 연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및 계약자 명단 등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됨.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Ⅵ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05.10.(월) • 확인방법 –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05.13.(목) ~ 05.18.(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 특별공급 당첨자 : 구비서류 제출 – 1, 2순위 당첨자 : 신청순위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수 접수간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예정	• 일시 : 2021.05.24.(월) ~ 05.28.(금)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하여 서류심사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별도의 일정을 통지받아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인터넷	이용기간	2021.05.10.(월) ~ 2021.05.19.(수) (10일간)
	이용방법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자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년 05월 10일(월) 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Ⅶ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1.05.24.(월) ~ 05.28.(금) (5일간, 09:30~17:00)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032-553-46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비 고
공통	○		신분증	계약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혹은 계좌이체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청약자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계약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는 견본주택 입장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철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당첨을 취소하거나 공급계약을 해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금액	농협은행	301-0280-6471-01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제도 실시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7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조경 및 시설계 과정에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됨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금 액	계약금(계약 시)	중도금(2021–08–13)	잔금(입주 시)	비 고
59A	3,960,000	400,000	400,000	3,160,000	
59B	2,820,000	300,000	300,000	2,220,000	
84	3,750,000	400,000	400,000	2,95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개별 세대에서 선택 가능하며, 확장시공 계약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진행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선택안	에어컨 설치부위	금 액	계약금(계약 시)	중도금(2021–08–13)	잔금(입주 시)	비 고
59A	2대	거실, 안방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LG전자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59B	2대	거실, 안방	4,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84	3대	거실, 안방, 주방	5,500,000	1,000,000	1,000,000	3,500,000	
	5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주방	8,500,000	1,000,000	1,000,000	6,500,000	

■ 추가선택 개별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항목		품목명	59A	59B	84	비고
현관	가구		현관중문	1,600,000	1,600,000	1,600,000	
			현관수납장	700,000	700,000	–	
			현관창고	–	–	1,000,000	
거실	마감재		바닥타일	900,000	900,000	1,100,000	
			거실아트월	800,000	800,000	900,000	대형아트월
	가구		거실팬트리장	1,000,000	–	–	
주방	가구		고급주방 특화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부, 사각싱크볼, 고급수전, 아일랜드장(84))	2,300,000	1,900,000	3,600,000	
			냉장고장	500,000	300,000	800,000	
			주방팬트리	–	1,200,000	1,500,000	59B(아일랜드장 포함)
			인출식 수납장	–	–	700,000	냉장고장 설치 시 선택가능
			주방 장식장	–	–	1,300,000	
	가전	광파오븐	LG(기본형)	400,000	400,000	400,000	
			LG(고급형)	1,000,000	1,000,000	1,000,000	
		인덕션	삼성	700,000	700,000	700,000	
			쿠쿠	700,000	700,000	700,000	
		식기세척기	삼성	900,000	900,000	900,000	
			LG	1,400,000	1,400,000	1,400,000	
침실	가구		안방 드레스룸(화장대 포함)	2,000,000	–	2,800,000	
			안방 붙박이장(화장대 포함)	–	3,300,000	–	
			침실 붙박이장(1개소당)	900,000	900,000	1,100,000	침실1,2 선택가능
욕실	가전		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	500,000	500,000	500,000	

■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항 목	59A	59B	84	비 고
주방 패키지	고급주방특화, 냉장고장, 주방팬트리(59B, 84), 주방장식장(84)	2,500,000	3,100,000	6,500,000	
가구 패키지	현관수납장(59A,B), 현관창고(84), 거실팬트리장(59A), 침실1 붙박이장 안방드레스룸(59A, 84), 안방붙박이장(59B)	4,200,000	4,400,000	4,400,000	

■ 추가선택품목 납부방법

납부계좌	은행	예금주	계약금(계약시)	중도금(2021–08–13)	잔금(입주지정일)
301-0280-6474-11	농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10%	10%	80%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문,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공급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합니다.

구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Ⅰ	문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문틀 하부 씰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 및 문짝, PL창호
Ⅱ	바닥	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Ⅲ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경량칸막이 등), 기타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 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Ⅳ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설비 클러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욕실제외)
Ⅴ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액세서리류,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방수공사 포함), 욕실등기구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 · 배선
Ⅵ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자동식소화기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Ⅶ	일반가구	신발장, 수납선반	
Ⅷ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 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 원, VAT 포함]

주택형(㎡)	59A	59B	84	비 고
금 액	21,501,000	21,458,000	29,129,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Ⅸ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공급 공고 상 면적은 주택형으로 표기하였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일주민 공고할 예정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이 건축중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이나 건축중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변환경 관련 등

구 분		내 용
주변환경관련	단지 주변도로	• 출입구는 단지 북측, 동측에 위치하여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교육시설 관련	• 초등학생은 (가칭)검단3초에배치예정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군교 내 배치예정임. • 고등학교 학군은 3학군교(서구)로 배정예정이며, 세일고, 인천고, 제물포고, 석정여고, 인천여고(일시 포함)까지 포함되어 배정됨.
	인접시설	• 단지 북측, 동측, 남측에는 도로가 위치하며, 서측에는 하천, 단독주택 등이 북측에는 공원, 유치원 및 중학교 용지가 위치하고 있어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지구여건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근린공원, 체육공원 및 녹지 등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기타사항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함.
단지	공동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환경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권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필로티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일대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 설치로 외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문주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북측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차장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골조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의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반	• 단지 지반레벨계획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옹벽(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며 장비 운전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조경	•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공용홀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201동	• 단지 북측 문주 및 북측, 동측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차량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202동	• 단지 동측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차량 전조등의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4호 라인 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 라인 1층이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음.
	203동	• 1호 라인 1층이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음. • 주동 뒤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204동	• 주동 앞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뒤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205동	• 3호 라인 1층이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음. • 주동 앞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206동	• 3호 라인 1층이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음. • 주동 인근 선큰과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207동	• 3호 라인 1층이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음. • 주동 인근 어린이집이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208동	• 단지 북측 문주 및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차량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1호 라인 1층이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음. • 208동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해당 저층부 세대는 세대,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 등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공통사항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창호	•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유색, 백색 색상이 사용되며 견본주택 상 유색 시공될 예정임.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확장된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간 내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견본주택	공통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확장형 세대 선택 시 견본주택과 비교하여 면적 및 구조, 마감재 등이 다르게 시공됨
	사이버 모델하우스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계약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아파트 외부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Ⅹ 기타 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해당사항 없음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규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천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85,891,872	건축비 (58)	건축 (23)	철근콘크리트 공사	31,011,955	건축비 (58)	기계설비 (9)	오배수설비공사	980,000
		기간이자	2,791,226			용접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1,102,303
		필요적 경비	4,481,663			조적공사	1,954,404			난방설비공사	515,368
		그 밖의 비용	10,336,044			미장공사	2,087,701			가스설비공사	533,897
건축비 (58)	토목 (13)	토공사	4,645,418			단열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155,914
		흙막이공사비	–			방수·방습공사	1,365,847			특수설비공사	834,201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2,160,193			공조설비공사	618,788
		옹벽공사	283,005			가구공사	1,463,404		그밖의 공종(4)	전기설비공사	10,948,595
		석축공사	–			금속공사	703,883			정보통신공사	1,396,596
		우수·오수공사	448,090			지붕 및 홈통공사	114,799			소방설비공사	5,329,475
		공동구 공사	–			창호공사	3,689,432			승강기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1,141,987		그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12,954,891
		도로포장공사	448,090			타일공사	2,090,560			이윤	7,940,095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			돌공사	221,967		간접비 (6)	설계비	960,300
		정화조시설공사	–			도장공사	1,207,239			감리비	2,965,932
		조경공사	3,052,155			도배공사	665,360			일반분양시설 경비	21,935,419
		부대시설공사	–			수장공사	1,182,862			분담금 및 부담금	9,255,673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3,941,904			주방용구공사	975,603			보상비	–
		가시설물공사	804,101			잡공사	4,426,995			기타 사업비성 경비	14,218,962
		지정 및 기초공사	880,776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2,558,061		그밖의 비용(1)		25,336,693
		철골공사	–			급탕설비공사	2,238,303		합계		297,248,000

※ 상기 택지비 항목중 그 밖의 비용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가산항목 중 흙막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건축비 항목중 단열공사비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등에 해당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 축	㈜한림이엔씨건축사사무소	1,987,497,600	부가세 포함
전 기	㈜신화에프씨	556,034,075	
소방 / 통신	에스비이엔씨	422,4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블럭 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208,251,100,000	제 05612021-101-00021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10퍼센트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한 입간처(공고 한 입간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입간처를 말함)에 공고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관 양도자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정하는 방법 포함)로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지로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도래하는 입주금(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을 납부기일 전에 납부하는 방법을 포함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대물변제 받은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의 대출금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의 승인 하에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이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13.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사업주체 명의로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 보증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이 입주금을 유용한 경우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채권자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증서에 적힌 보증채권자를 말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입점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그 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합니다.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1	시공사 2	비 고
법 인 명	㈜전승건설	㈜우미개발	㈜명상건설	
법인등록번호	200111-0427314	200111-0042568	200111-0242027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광주-주택2015-0033	광주-주택2000-0004	광주-주택2007-0015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32-553-46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www.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우미린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운영기간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일반 관람이 불가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당첨자(예비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 및 계약기간 내 한시적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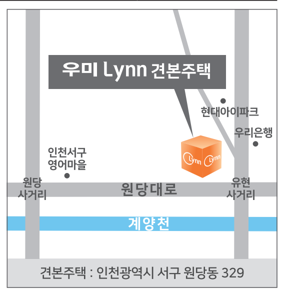

032) 553-4600

총 810세대 [59 · 84㎡]

■ 시행 : ㈜전승건설 ■ 시공 : ㈜우미개발, ㈜명상건설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